

1. 개정 이유

영양사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 확보를 위해 영양사 보수교육 시간 축소를 방지하고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시 제출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6조제2호의 “감염병환자”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인용조항 수정(안 제14조)

- 1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B형 간염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제2조 제4호 나목으로 변경됨
- 2) 인용조항을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나목으로 변경함
- 3) 인용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

나. 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조항 수정
(안 제16조 제1항)

- 1) 행정안전부 고시인 「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 정보」 개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‘본인 정보 제공요구’대상 행정정보로 지정됨
- 2) 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민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

- 3) 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신청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

다. 영양사 보수교육 갈음 조항 삭제 및 보수교육 내용 규정(안 제18조 제2항)

- 1) 식품위생법 개정예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정기 식품 위생교육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고,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2항의 보수교육 갈음 조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됨
- 2) 식품위생교육 이수 시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갈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보수교육의 내용을 명시
- 3) 법 개정으로 영양사의 전문성, 직업윤리 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영양사 보수교육이 유지 및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아목”을 “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통하여”를 “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(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및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기본증명서”를 “기본증명서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전단 중 “한다. 다만, 해당 연도에 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,”를 “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제18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
2.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
3. 국민영양 등의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
4. 선진 영양관리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감염병환자) 법 제16조제2호에서 “ <u>감염병환자</u> ”란 「 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.	제14조(감염병환자) -----「 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4호나목-----.
제16조(면허증의 재교부)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,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(자격증)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(초)본을 확인(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)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16조(면허증의 재교부) ① ---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(<u>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</u>) 및 -----.

1. (생 략)

2.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: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
가. 성명 변경 시: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 증명서

나. (생 략)

3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18조(보수교육의 시기·대상·비용·방법 등) ① (생 략)

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,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연도에 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-----
----- 기본 증명서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

나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보수교육의 시기·대상·비용·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한다.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<u>며,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③ ~ ⑥ (생략)	<u>1.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</u> <u>2.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</u> <u>3. 국민영양 등의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</u> <u>4. 선진 영양관리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</u> <u>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